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3(2015.12.28.) 사업시행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16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임정동 189-1번지 일대/ 4,661.20㎡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더센터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선권수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7호 (역삼동, 한신인터밸리24빌딩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12월 28일
7. 주요 변경내용
 - 주용도 변경(업무시설→공동주택)
 - 건축계획 변경(지하7, 지상20층 연 48,526.72㎡→지하8, 지상26층 연53,475.51㎡)
 -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차량 진출입구 위치변경 등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대지면적 (㎡)	층수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건축계획		비고
						전용면적	세대수(임대)	
3,664.0	지하8층 지상26층	53,475.51	50.67	918.98	89.98	45A	48	
						48A	48	
						49A	96	
						49B	48 (임대 38세대)	
						59A	96	
						59B	24	
						59C	24	
						59D	6	
							390	

9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